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가 개정(법률 제16758호, 2019.12.10. 공포)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가 개정(법률 제15376호, 2018.2.21. 공포)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정한 정보

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의 세부 절차 규정 (안 제17조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규정 삭제(안 제24조 및 별표3 제2호나목)

-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구축 통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안 제24조)을 삭제함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에서 통지의무 위반시 제재규정(별표3 제2호나목)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8조의2 제1항”으로 하고, 하단 부분 중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고,”를 “심사절차 및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u>심사 절차를 거쳐</u>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③ ----- 법 제8조의2제1항----- ----- ----- ----- ----- ----- 심사 절차 및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취약점의 분석·평가의 시기) < 신 설 >	제17조(취약점의 분석·평가의 시기)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현행	개정안
	<u>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u> <u>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u> <u>령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취약</u> <u>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u> <u>다.</u>
<u>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u> <u>통지)</u> <u>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보</u> <u>공유·분석센터의 장은 과학기술</u> <u>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보공</u> <u>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따라</u> <u>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공유·분</u> <u>석센터를 구축한 날부터 30일 이</u> <u>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u> <u>게 통지하여야 한다.</u> <u>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u> <u>2.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u> <u>(성명·주소·생년월일 및 경력)</u> <u>3. 주요업무</u> <u>4. 회비·수수료 등 재원조달방</u>	<u>제24조<삭 제></u> <u>① <삭 제></u>

현행	개정안																																				
[별표 3]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만원)</th></tr><tr><th>1차</th><th>2차</th><th>3차 이상</th></tr><tr><td>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td><td>법 제30조 제1항 제1호</td><td>200</td><td>500</td><td>1000</td></tr><tr><td>나.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30조 제1항 제2호</td><td>200</td><td>500</td><td>10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200	500	1000	[별표 3]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만원)</th></tr><tr><th>1차</th><th>2차</th><th>3차 이상</th></tr><tr><td>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td><td>법 제30조 제1항 제1호</td><td>200</td><td>500</td><td>1000</td></tr><tr><td>나. <삭 제></td><td><삭 제></td><td><삭제></td><td><삭제></td><td><삭 제></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0	500	1000	나.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200	5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0	500	1000																																	
나.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202-6465